

2013년 한국지역 “대만장학금” 세부 선발요강

1. 목적 :

진취적이며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한국학생이 대만에서 석·박사 학위과정에 수학하여 대만 고등교육의 자원 및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하는 장학지원 프로그램이다.

2. 장학금 신청 자격 :

- 1) 학사 및 석사과정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.
- 2) 중화민국 화교 신분이 아니며, 중화민국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인 자.
- 3) 동시에 대만 정부기관 및 학교의 기타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.
※ 만약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본 장학금 수상 자격을 취소하고, 이미 받은 장학금은 반환 조치한다.
- 4) 현재 대만소재 대학(교)에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전공자 중, 금년 6월에 졸업예정이고, 계속하여 다음 단계(석/박)사 학위를 전공 할 자.
- 5) 대만 각 대학 및 대학교와 한국학교 간 학술교류협약에 의한 교환 학생 및 복수 학위 과정생의 신분이 아니한 자.
- 6) 본 장학금 및 대만교육부가 제공하는 중국어 어학연수 장학금의 자격을 취소당한 적이 없는 자.
- 7) 대만 소재 대학 및 대학교 학위과정 수학중에 휴학한 적이 없는 자.
- 8) 금년 9월 “대만장학금계획학교연맹 (臺灣獎學金計畫學校聯盟)” 내의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석·박사과정에 수학할 예정인 자.
※ “대만장학금계획학교연맹 (臺灣獎學金計畫學校聯盟)”의 학교 목록은 <http://taiwanscholarship.moe.gov.tw> 에서 참고 바람.
- 9) 석사과정 신청자는 학사 학위 이상의 소유자여야 하며, 박사과정 신청자는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여야 한다.

3. 장학금 정원 : 6명

4. 장학 내용 :

- 1) 매월 학생 한 명당 생활지원비 NT\$ 20,000원
- 2) 학비 및 기타비용(雜費)
※ 기타비용은 대리신청수수비, 논문지도비, 보험, 기숙사 및 인터넷 사

용료 등의 상관 비용을 불포함하며, 본 비용은 장학금 수상자가 각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.

5. 장학금 지급 기간 : 석사 2년, 박사 4년

6. 제출서류 :

- 1) “대만장학금신청서” 중국어 및 한글 각 1부
- 2) 최종학위증명서 1부 (대만 이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해당 중화민국주재공관 영사관, 대표부 또는 사무처에서 인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본 서류는 최종 합격후에 제출하여도 무관하나 중문 및 영문 이외의 기타 언어는 인증을 받은 중문 혹은 영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)
- 3) 석사학위 신청자는 대학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고, 박사학위 신청자는 석사과정 전학년 학업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 학업성적을 GPA로 환산하여 만점이 4.5점일 경우, GPA 평균이 3.5 점 이상 이여야 한다. (학업성적표가 GPA가 아닌 자는 GPA로 환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)
- 4) 대만 소재 대학원 입학신청 증명서류 (예 : 입학신청서 사본 등)
- 5) 여권 사본 1부
- 6)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TOCFL의 高階級 및 流利級시험 성적표 및 증서의 사본. 대만에서 전과정 영업수업 신청자는 TOEFL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한 기타 영어능력의 중급이상의 성적증명서 사본.
- 7) 대만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발행한 2013-2014학년도 입학허가 증명 서류 (본 서류는 늦어도 금년 6월 30일 이전까지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문화조 (이하 “주한문화조”로 칭함) 에 제출하여야 한다.)
- 8) 봉사활동 증명서류
- 9) 학교장 혹은 교수 추천서 2부

본 서류는 2013년 4월 1일 이전까지 주한문화조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.
주소 : 우)110-73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6층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문화조

7. 장학금 수혜자는 한국으로 귀국 또는 장학금 수령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된 연락처를 주한문화조에 알려야 한다.

8. 심사절차 :

- 1) 2013년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본 장학금 세부 신청요강을 공고하고, 한국 각 대학에 공지한다.
- 2) 심사기준은 TOCFL 성적 50%,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 40%, 봉사활동 성적 10%로 구분하여 평가하고, 총 10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후 2013년 4월말-5월초에 면접을 실시하여 위 성적과 면접성적 합산하여 장학금 수상자 6명과 예비후보자 2명을 선발한다.
- 3) 장학금 수상자는 금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대만 대학교 및 대학원의 석·박사과정 입학허가서 사본을 주한문화조에 제출하여야 한다. 기한내에 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장학금 수상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, 주한문화조는 예비 후보자에게 순차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.
- 4) 장학금 수상자는 주한문화조가 실시하는 “대만 유학 설명회 (올해 7월 중순 경)”에 필히 참석하여, 장학금 수상자의 권리와 의무 및 대만유학 관련 규정을 이해하여야 한다.

9. 장학금 지급중지 및 취소 :

- 1) 장학금 수상자의 매 학기 학업 평균성적은 최저 80점으로 규정하며, 만약 각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규정하는 더 높은 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른다. 박사과정 수학 3년째 이상인 자의 경우 학업성적 계산 방식 및 학기 성적표준은 해당 대학원의 규정에 따른다. 해당 학기 학업 평균성적이 각 학교의 평균에 미달하는 자는 1개월간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, 연속하여 2학기 이상 각 학교의 학업성적 평균에 미달하는 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수상자격을 취소한다.
- 2) 장학금 수상자가 입학 후 겨울,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수업 시간의 1/3이상 무단 결석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, 해당 월의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지하고, 무단 결석 사유에 따라 해당 학교는 장학금 수상 자격을 취소한다.
- 3) 만약 수학하는 학교의 수업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만을 떠나 실습과정을 거쳐야 하는 자는 대만 출국기간 동안의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지하고, 해당 학기의 학비 및 기타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.
- 4) 중화민국 법률에 저촉되거나 수학하는 학교에서 처벌, 휴학 또는 퇴학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취소한다. 단, 편입 및 전과 등의 사유로 원래 수학하던 학교의 동의를 얻어 자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 장학금의 지급을 취소하지 않는다.

- 5) 매 학기 등록기간 동안 수학하는 대학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“학업 목적의 외국인 거류증”의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장학금 지급 기간동안 대만거류 사유가 “학업”이외의 기타 목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취소한다.
- 6) 장학금 수상기간 동안 대만에서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대만교육부가 인정하는 장학금 연속 사정 자격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혹은 수학하는 학교를 통해 대만교육부에 장학생으로 신청되지 못하거나 대만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본 장학금 수상 자격을 취소한다. 뿐만 아니라, 해당 학교는 규정에 의거하여, 일을 시작한 날부터 이미 수령한 본 장학금의 생활지원비를 반환조치 한다.

10. 기타 주의사항 :

- 1) 장학금 수상자는 해당 학교가 규정한 등록일 전에 도착하여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한다.
- 2) 편입, 전과 및 휴학을 할 경우에는 “대만장학금작업요점 (臺灣獎學金作業要點)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
- 3) 본 요강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중화민국교육부와 해당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